

## 『2021년 청년창업챌린지』 (예비)창업자 모집 공고

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(또는 아이디어)을 보유한 청년 (예비)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『2021년 청년창업 챌린지』에 참여할 (예비)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1년 5월 7일  
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

### 1 모집 개요

- 사업목적** :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(또는 아이디어)을 보유한 청년 (예비)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, 창업교육, 멘토링 등을 지원
- 지원대상** :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('81년 5월 7일 이후 출생)인 자로,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(본점)가 인천광역시인 3년 이내('18년 5월 7일 이후) 창업자
- 지원 기술분야** : **全 기술분야**  
\* 단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은 제외
- 선정규모** : **6명(팀)**
- 지원내용** :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, 멘토링, 사업화자금, 후속 연계지원 등

## □ 신청자격

-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('81년 5월 7일 이후 출생)인 자로,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(본점)가 인천광역시인 3년 이내('18년 5월 7일 이후) 창업자
  -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현재 ('21.5.7 기준)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
  - \* 예비창업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인천 지역 내 사업자등록(본점) 필수
  - 창업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
  - \*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(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)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

## □ 신청 제외 대상

-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
- ② 신용 불량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- ③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 등 반사회적 성격 창업 아이디어
- ④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창업 아이디어
- ⑤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창업관련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
- ⑥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## □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2021. 5. 7.(금) ~ 5. 20.(목) 18:00 까지
  - ※ 신청 마감일(5.20.) 18:00까지 이메일 도착분까지 유효함
- (신청방법) 이메일(iccei5035@gmail.com) 제출
- (제출서류)
  -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\*
  - \*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자에서 제외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창업 및 유지 동의서
-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중 1개, 청년 자격요건 확인)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- 참가 자격기준 관련 증빙서류

대 상	목 록	
예비창업자	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* 발급절차 : 국세청 홈텍스→민원증명→사실증명신청→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	
기 창업자 (‘18.5.7. 이후 창업자)	<b>(공통)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</b> * 발급절차 : 국세청 홈텍스→민원증명→사실증명신청→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	
	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 사본
	법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

\* 자격검토를 위한 **모든 증빙서류**는 공고일 이후(‘21.5.7.) 발급된 것으로 제출

### 3

## 유의사항

#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접수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**반환 불가**하며, 기업명, 사업(아이템)명, 사업개요, 대표, 실무자(참가자) 등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**변경 불가**
-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 혜택이 취소 및 환수됨
- 평가점수 및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, 참가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### □ 지식재산권 관련 유의사항

-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

## 4

## 지원사항 및 기간

□ 지원기간 : 협약 체결일 ~ 2021.10.31.

## □ 지원내용

○ 각 기업별 사업화 지원금 1,000만원 지원

\* 지원금 범위 내 지원금 사용 승인 신청서 제출 ⇒ 사업화에 필요한 제품·서비스 구매 및 거래처 비용 선지급 ⇒ 사업화 검수 및 증빙서류 제출 ⇒ 제출서류 검토 후 창업자에게 지원금 지급

구분	지원 세부사항												
사업화자금	- 외주용역, 지재권취득, 마케팅 등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기업별 최대 1,000만원 한도 지원(부가세 제외)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지원항목</th> <th>지원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외주용역비</td> <td>-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 관련 외부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의뢰·제작에 대한 비용</td> </tr> <tr> <td>재료비</td> <td>-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마케팅비</td> <td>-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,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전시회(박람회) 참가비</td> <td>-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·외 전시회 참가등록비,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</td> </tr> <tr> <td>특허권/무형자산취득비</td> <td>- 지식재산권(특허, 상표, S/W 등록 포함 저작권 등) 출원·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원항목	지원내용	외주용역비	-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 관련 외부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의뢰·제작에 대한 비용	재료비	-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	마케팅비	-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,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	전시회(박람회) 참가비	-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·외 전시회 참가등록비,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	특허권/무형자산취득비	- 지식재산권(특허, 상표, S/W 등록 포함 저작권 등) 출원·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
	지원항목	지원내용											
	외주용역비	-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 관련 외부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의뢰·제작에 대한 비용											
	재료비	-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											
	마케팅비	-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,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											
	전시회(박람회) 참가비	-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·외 전시회 참가등록비,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											
특허권/무형자산취득비	- 지식재산권(특허, 상표, S/W 등록 포함 저작권 등) 출원·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												
교육 및 멘토링	- 선정자 대상 오프라인 교육, 멘토링 운영 *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자 교육 참여(필수) * 최소 2회 멘토링 참여(필수)												
성과공유회	-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 창업기업 상금 지원												
후속연계	-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으로 등록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공간 입주 자격 부여 (창업 공간 입주는 센터 내부 규정에 따름) R&D 지원, 마케팅 지원 등 센터 프로그램 연계 지원 자금 융자 및 투자 유치 연계 추천												

## 5

### 선정자의 의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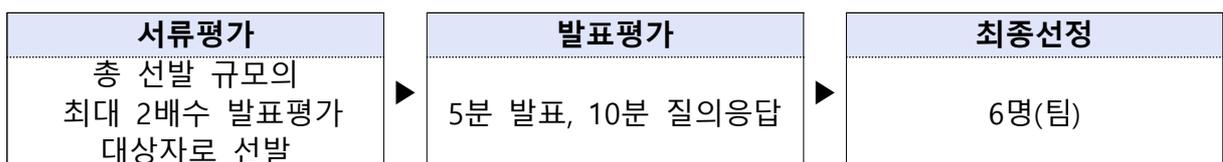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선정자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.  
\* 협약기간 내 휴·폐업할 경우에도 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 가능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## 6

###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

#### □ 평가방법

- **(선정규모)** 총 6명 선발
- **(평가방법)**
  - 사업계획서와 제출 서류를 토대로 요건검토, 서류 및 발표평가\*를 통해 최종 선정
  - \* 발표평가 시, 대표자 본인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-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

- (평가항목)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참가자(팀)의 문제인식, 해결방안, 성장전략, 팀구성 등을 평가

< 평가 항목 >

평가항목	세부내용
문제인식	제품·서비스의 개발동기 및 목적(필요성)
해결방안	제품·서비스의 개발 방안,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
성장전략	자금소요 및 조달계획,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
팀 구성 등	대표자·직원의 보유역량

- **추진일정(안)** 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(변경 시 대상자 별도 안내)



6

문의처

- **문의처**

-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이상철 매니저 032-458-5035/iccei5035@gmail.com